

유급 병가 및 안전 휴가(ESST)

발효일: 2024년 1월 1일

ESST 정의

유급 병가 및 안전 휴가(Earned Sick and Safe Time, ESST)는 고용인이 아프거나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경우 또는 고용인이나 그 가족이 가정 폭력, 성폭행 또는 스토킹을 경험한 경우 등 특정 사유에 대해 사용하도록 미네소타 내 고용인에게 고용주가 제공해야 하는 유급 휴가입니다.

ESST는 고용인이 근로 시 받는 동일한 요율로 지급되어야 합니다.

ESST 자격 대상

고용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ESST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.

- 미네소타 내 고용주를 위해 연간 80시간 이상 근무할 예정 및
- 독립 계약자가 아님

임시, 계절 및 시간제 고용인은 ESST 수혜 자격이 없습니다.

보복은 법에 위배됩니다.

고용주는 ESST 법률에 따른 법적 권리를 주장한 고용인에게 보복하거나 부당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.

ESST 누적 및 사용 방식

- 고용인에게는 근무 시간 30시간마다 최소 1시간의 ESST가 누적됩니다. 단, 고용주가 법에서 허용하는 대로 ESST를 선제공한 경우는 제외입니다.
- ESST는 근무 첫날부터 누적되기 시작하며, 고용인은 누적된 ESS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고용주는 고용인이 매년 최소 48시간의 ESST를 누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, 미사용 ESST는 최대 누적을 최소 80시간까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.

- 고용주는 ESST가 이를 연속 예정된 근무일 이상 사용될 경우, 근로자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ESST 사용 가능 용도

ESST는 다음을 포함한 사유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

- 고용인 또는 그 가족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질병, 치료 또는 예방적 진료
- 고용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가정 폭력, 성폭행, 스토킹으로 인한 결근
- 날씨 또는 공공 비상사태로 인한 고용인의 직장 폐쇄 또는 날씨 또는 공공 비상사태로 인한 그 가족의 학교 또는 돌봄 시설 폐쇄 및
- 장례식 준비, 장례식이나 추도식 참석, 가족 구성원의 사망 후 발생하는 재정적 또는 법적 문제 해결

보복은 법에 위배됩니다.

고용주는 ESST 법률에 따른 법적 권리를 주장한 고용인에게 보복하거나 부당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.



병가

정신적 또는 육체적 질병, 치료 또는 예방적 진료 목적



안전 휴가

가정폭력, 성폭력 또는 스토킹 해결 목적